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16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이용선·황명선·윤후덕

허 영・박지원・김성회

김문수 · 박용갑 · 김 윤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인 원격영상회의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2022년 6월 30일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실효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 하려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봉쇄된 사건이 발생하였 고, 이에 계엄 선포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 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장이 계엄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 등의 비

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 3. 계엄(戒嚴)의 선포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 급감염병의 확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

나 변경한다.

-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 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 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	<u><</u> 삭	제>			
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					
<u>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u>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					
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					
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					
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					
<u>다.</u>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					
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					
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실시한다. 다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수있다.
-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 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 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본회의 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 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 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 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 다.

- 1. 천재지변
-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3. 계엄(戒嚴)의 선포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
-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 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 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협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 ①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 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 <u>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u> <u>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u> <u> 다.</u>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수있다.
-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 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 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